

19 즐거운 아침, 행복한 학교 [시·군·구 공동] / 사업코드 130205

항 목	내 용					
① 목 적	청소년기 충분한 신체활동 및 균형적인 영양제공, 학교생활 유연성관리를 매개로 활발한 신체 및 두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시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					
② 서비스 대상	소득 및 연령 ★우선 순위 (2020년 변경) 유의사항	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면서 만 6세 이상(2014년생)~만 15세(2005년생) 이하의 초·중학교 재학생 (*연령:2005.01.01.~2014.12.31.) 1.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. 즐거운 아침, 행복한 학교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원 진료 대상자,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(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. 단,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.)				
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	①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99 1063 1448 1281"> <tr> <td data-bbox="399 1063 902 1230">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</td> <td data-bbox="909 1063 1448 123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9 1232 902 1281">신청자가 만14세이상~만15세이하인 경우</td> <td data-bbox="909 1232 1448 1281">카드사에 신청(카드사 별도 문의)</td> </tr> </table> <p>★⑥초·중학교 재학생 :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(2020년 삭제)</p>		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	신청자가 만14세이상~만15세이하인 경우	카드사에 신청(카드사 별도 문의)
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					
신청자가 만14세이상~만15세이하인 경우	카드사에 신청(카드사 별도 문의)					
④ 제공기관 및 인력	<p>▶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99 1467 1469 2034"> <tr> <td data-bbox="399 1467 558 1871"> 시설/장비 기준 (모두 충족) </td> <td data-bbox="565 1467 1469 2034"> 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실 :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&관리책임자,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.(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) ■ 전용공간(프로그램실) : 69.3㎡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■ 기타 설비, 비품 구비 필수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[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] 시설이용확인서(사업별서식 제5호) 별도 제출 ⇒자세한 내용은 ‘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’ 참고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19년도 추가 :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공간(프로그램실) 1개실 면적이 69.3㎡이상이어야 함. - ‘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-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</td> </tr> </table>		시설/장비 기준 (모두 충족)	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실 :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&관리책임자,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.(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) ■ 전용공간(프로그램실) : 69.3㎡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■ 기타 설비, 비품 구비 필수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[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] 시설이용확인서(사업별서식 제5호) 별도 제출 ⇒자세한 내용은 ‘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’ 참고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19년도 추가 :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공간(프로그램실) 1개실 면적이 69.3㎡이상이어야 함. - ‘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-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		
시설/장비 기준 (모두 충족)	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실 :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&관리책임자,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.(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) ■ 전용공간(프로그램실) : 69.3㎡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 ■ 기타 설비, 비품 구비 필수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[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] 시설이용확인서(사업별서식 제5호) 별도 제출 ⇒자세한 내용은 ‘⑨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’ 참고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19년도 추가 :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공간(프로그램실) 1개실 면적이 69.3㎡이상이어야 함. - ‘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 -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 					

항 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391 369 565 714">제공인력 기준</td> <td data-bbox="565 369 1469 714"> <p>다음 ①,②,③,④,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① "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"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② "사회복지사업법"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③ "청소년기본법"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"동법"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④ "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"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⑤ "자격기본법"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</p> <p>▶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://www.pqi.or.kr 에서 조회바람</p> </td> </tr> </table>	제공인력 기준	<p>다음 ①,②,③,④,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① "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"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② "사회복지사업법"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③ "청소년기본법"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"동법"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④ "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"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⑤ "자격기본법"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</p> <p>▶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://www.pqi.or.kr 에서 조회바람</p>																					
제공인력 기준	<p>다음 ①,②,③,④,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① "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"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② "사회복지사업법"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③ "청소년기본법"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"동법"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④ "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"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/p> <p>⑤ "자격기본법"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</p> <p>▶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http://www.pqi.or.kr 에서 조회바람</p>						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가격/ 제공기간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391 748 521 1104" rowspan="2">서비스 가격</td> <td colspan="3" data-bbox="521 748 1469 789">▶ 월 15만원 (정부지원 80~90% / 본인부담 10~20%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21 789 695 959">구분</td> <td data-bbox="695 789 1052 959">(1등급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 data-bbox="1052 789 1469 959">(2등급) 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1 959 521 1104"></td> <td data-bbox="521 959 695 1104">정부지원금</td> <td data-bbox="695 959 1052 1104">135,000원(90%)</td> <td data-bbox="1052 959 1469 1104">120,000원(80%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1 1104 521 1177"></td> <td data-bbox="521 1104 695 1177">본인부담금</td> <td data-bbox="695 1104 1052 1177">15,000원(10%)</td> <td data-bbox="1052 1104 1469 1177">30,000원(20%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1 1104 521 1177"></td> <td colspan="3" data-bbox="521 1104 1469 1177">▶ 회차별 금액 [정부지원금] 1등급:6,750원씩 / 2등급:6,000원씩산정 [본인부담금] 1등급:750원씩 / 2등급:1,500원씩 산정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1 1104 521 1177">이용자별 제공기간</td> <td colspan="3" data-bbox="521 1104 1469 1177">12개월</td> </tr> </table>	서비스 가격	▶ 월 15만원 (정부지원 80~90% / 본인부담 10~20%)			구분	(1등급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(2등급) 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	정부지원금	135,000원(90%)	120,000원(80%)		본인부담금	15,000원(10%)	30,000원(20%)		▶ 회차별 금액 [정부지원금] 1등급:6,750원씩 / 2등급:6,000원씩산정 [본인부담금] 1등급:750원씩 / 2등급:1,500원씩 산정			이용자별 제공기간	12개월		
서비스 가격	▶ 월 15만원 (정부지원 80~90% / 본인부담 10~20%)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(1등급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(2등급) 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																				
	정부지원금	135,000원(90%)	120,000원(80%)																					
	본인부담금	15,000원(10%)	30,000원(20%)																					
	▶ 회차별 금액 [정부지원금] 1등급:6,750원씩 / 2등급:6,000원씩산정 [본인부담금] 1등급:750원씩 / 2등급:1,500원씩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
이용자별 제공기간	12개월																							
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▶ 서비스 내용 :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91 1242 545 1281">구 분</th> <th data-bbox="545 1242 1284 1281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284 1242 1469 1281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91 1418 545 1494" rowspan="3">기본 서비스</td> <td data-bbox="545 1281 1284 1418"> ▷사전사후검사 : 개별운동능력검사, 체성분검사, 학교적응유연성검사, 자아존중감척도검사, 영양지수(NQ검사) (총 5종 실시) ▶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</td> <td data-bbox="1284 1281 1469 1418">연 2회 (바우처 결제불가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45 1418 1284 1517"> ▷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(회당 30분) ▷아침영양제공(회당 15분) </td> <td data-bbox="1284 1418 1469 1517">주 5회 (회당 45분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45 1517 1284 1632"> ▷부모교육 및 상담 (제공기록지 기록 필수) - 전화, 상담,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-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(가정통신문) 배부 </td> <td data-bbox="1284 1517 1469 1632">월 1회 (바우처 결제불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▶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단계 : 사전검사 총 5종 실시 2단계 : 기본서비스 제공 3단계 : 매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내용 전달(보고서, 가정통신문 등) 4단계 : 사후검사(총 5종)를 통한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	구 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기본 서비스	▷사전사후검사 : 개별운동능력검사, 체성분검사, 학교적응유연성검사, 자아존중감척도검사, 영양지수(NQ검사) (총 5종 실시) ▶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	연 2회 (바우처 결제불가)	▷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(회당 30분) ▷아침영양제공(회당 15분)	주 5회 (회당 45분)	▷부모교육 및 상담 (제공기록지 기록 필수) - 전화, 상담,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-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(가정통신문) 배부	월 1회 (바우처 결제불가)													
구 분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			
기본 서비스	▷사전사후검사 : 개별운동능력검사, 체성분검사, 학교적응유연성검사, 자아존중감척도검사, 영양지수(NQ검사) (총 5종 실시) ▶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	연 2회 (바우처 결제불가)																						
	▷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(회당 30분) ▷아침영양제공(회당 15분)	주 5회 (회당 45분)																						
	▷부모교육 및 상담 (제공기록지 기록 필수) - 전화, 상담,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-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(가정통신문) 배부	월 1회 (바우처 결제불가)																						
⑦ 서비스 실시역	<p>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서구</p> <p>※ 제공기관/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.</p>																							
⑧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	<p>○ 서비스형태 : 집단활동형으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'시설이용확인서' 제출</p>																							

항 목	내 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 집단규모 1:20 이하 ○ 사전·사후 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. - 사전검사 : 서비스 시작월 실시 / 사후검사 : 종료월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- 검사도구 : 개별운동능력검사, 체성분검사, 학교적응유연성검사, 자아존중감척도검사, 영양지수(NQ지수)검사 총 5종 ○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(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, 주요 내용, 이용자 서명, 제공인력, 제공장소, 특이사항 등을 기록 - 이용자,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- 부모교육 및 상담 내용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: 실시방법, 제공내용 등 구체적 기록 ○ 보고서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월별 서비스 제공 내용 전달 ○ 결제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지원금 :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,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- 본인부담금 :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,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○ 보강 실시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비스 미제공일(결석일)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.(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은 X) -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,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. ○ 비상연락체계(유관기관, 보호자 등)와 이용자-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(연 2회이상) ○ 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'제공기관 업무매뉴얼'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
<p>⑨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,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(대인/대물 보상) -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(대인/대물 보상) - 서비스 제공장소(학교)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[추가 제출서류 : 시설이용확인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필수 명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일자, 시간, 장소,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-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(이용자 안전교육 계획, 비상연락망 구축 등) 수립하여 함께 제출 ▷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 ▷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,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 ▷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, 배상/상해보험(총 2종) 가입 필수 :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(대인/대물 보상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공기관 등록 시,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(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⑥서비스내용 및 절차'에 명시된 '서비스 내용'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